

의안번호	제2774호
의결	2024. . .
연월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김향숙 의원
발의연월일	2024. 4. 22.

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향숙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7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4. 22.

발 의 자 : 김향숙 의원(1인)

찬 성 자 : 정영환, 이쌍자, 김희태,
허옥희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고성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익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“공용차량”, “업무담당부서” 등 용어의 정의 정비(안 제2조)

나. 교육·세미나·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 삭제(안 제3조)

다.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6조 및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20호

- 예고기간: 2024. 5. 8.(수) ~ 2024. 5. 13.(월) [5일간]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· 이”를 “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한다)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 및 읍·면사무소”를 “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관·과, 직속기관, 사업소 및 읍·면사무소”를 “부서, 직속기관, 사업소”로 한다.

제3조제4호 중 “기관단체 등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)”을 “기관단체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배차가능차량 유무”를 “배차가능 여부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중 “가무”를 “노래와 춤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<u>·이</u>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공용차량”이란 고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<u>한다</u>) <u>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 및 읍·면사무소에</u>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.</p> <p>2. “업무담당부서”란 군 본청의 <u>관·과, 직속기관, 사업소 및 읍·면사무소</u>를 말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3조(지원범위)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<u>한다</u>)가 다른 행정기관,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, 새마을지도자,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<u>기관단체 등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)</u>에서 교육·세미나·공청</p>	<p>제2조(정의) <u>인</u>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한다</u>)----- ----- -----.</p> <p>2. ----- <u>부서, 직속기관, 사업소</u>----- 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지원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<u>기관단체</u>----- ----- -----</p>

<p>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</p> <p>5. ~ 7. (생략)</p> <p>제6조(지원결정)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, <u>배차가능차량 유무</u>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·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7조(이용자 등의 의무)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,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공용차량 내에서 음주, 흡연, <u>가무</u>,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----- -----</p> <p>5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지원결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배차가능 여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이용자 등의 의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노래와 춤</u>----- ----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